

「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호 의원 외 3인

2. 찬 성 자 : 김근한 의원 외 8인

3. 제안이유

-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「노인복지법」에 정의됨.
- 개정 전 조례에는 내용이 나열식으로 표기되어 복지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」의 변화를 담기에 어려움이 있음.
- 또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서는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,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구미시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다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.

4. 주요내용

- 시설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(안 제3조)
- 복지관 사업을 상위법 및 지침에 근거하여 개정(안 제4조)
- 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허가 국가유공자 추가(안 제9조)
- 품질향상 및 평가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11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
 -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6조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5조의2, 제43조의2

6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시설의 이용료 면제대상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행사를 추가하고 품질향상 및 평가를 구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먼저, 제3조의 나열식 시설내용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고, 시설공간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,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- 또한, 제9조의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「구미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위한 행사를 신설하여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그리고, 제11조 품질향상 및 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를 구미시의회에 보고토록 한 것은 평가 세부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운영보완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시민의 복지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.
- 해당 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한 것임. 또한, 전국적인 시설 평가를 통해 지역별 및 시설 종별 운영 수준의 균형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제도로 시설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가진 것임.
- 집행기관은 시설 평가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, 업무컨설팅 활용 및 타 시·군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에게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.